

부수업무 보고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제이자산운용 주식회사
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: 2024년 9월 12일
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4년 9월 2일

4. 부수업무의 내용 :

- 특별자산(NPL채권) 투자관련 컨설팅 및 지원업무
- 특별자산(NPL채권) 투자관련 투자관련 금융구조설계 및 자금조달방안 자문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길 7, 3층

6.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길 7, 3층
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
1) 특별자산(NPL채권) 투자관련 컨설팅 및 지원업무

- NPL채권 투자와 관련하여 고객이 요청한 투자대상 NPL채권에 관한 정보 파악·제공, NPL 채권관련 권리관계 및 사업성 분석, 관련자료 정리·제공 등 NPL투자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업무를 지원

- NPL투자 사업관련자간 업무조율 및 일정 관리

2) 특별자산(NPL채권) 투자관련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방안 자문

- NPL채권 투자관련 자금조달 및 상환방법 등 금융구조에 대한 컨설팅 및 업무지원 서비스 제공

※ 단, 제공하는 자문업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를 요하는 업무는 제외